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현행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한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유통 중일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이미 판매되어 사용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소방용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한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시정조치계획서 제출과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안 제40조제6항)

- 제조자·수입자는 7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
- 구매자에게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사항을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규정

나. 소비자 기본법 준용(안 제40조제7항)

-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한 회수·교환·폐기 등에 관한 사항

다.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 등의 가중처분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 처분은 가중 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6, 별표 8의2)

라. 소방과 관련된 분야 학력을 취득하기 이전의 경력을 제품검사 전문기관
검사인력 근무경력에 인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안 별표1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소방용품을 회수·교환·폐기하도록”을 “소방용품(유통 중이거나 이미 판매되어 사용중인 경우 포함)을 회수·교환·폐기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소방청장에게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매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⑦ 소방청장은 제3항부터 5항까지 사항 외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43조제6항제4호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또는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8의2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3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란 전기·전자·통신, 기계·재료, 화학·화공학, 섬유, 소방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를 말한다.
2.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졸업·학력인정 또는 학위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수집검사 등) ①·② (생략)	제40조(수집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소방용품과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로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과 동시에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u>소방용품을 회수·교환·폐기하도록</u>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u>소방용품(유통 중이거나 이미 판매되어 사용중인 경우 포함)을 회수·교환·폐기하도록</u>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제4항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소방청장에게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매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3조(수수료)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u>법 제39조제1항</u>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생산제품검사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u>⑦ 소방청장은 제3항부터 5항까지 사항 외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u> 제43조(수수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 또는 법 제40조제1항</u>----- ----- -----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 <신설 2023. 0. 0.>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검사중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검사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라. 검사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	형식승인취소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명령	검사중지 3개월	형식승인취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3호	형식승인취소		

라. 제품검사 시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1)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간격 내에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에서 소방용품의 주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결점(치명적 결점)이 2개 이상의 제품에서 발생한 경우 2)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간격 내에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에서 소방용품의 주된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점(중결점)이 2개 이상의 제품에서 발생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4호	검사 중지 3개월 검사 중지 1개월	검사 중지 6개월 검사 중지 4개월	형식 승인 취소 형식 승인 취소
마. 법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7호	형식 승인 취소		

비고: 품질제품검사의 경우 “검사중지”란 품질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로 변경하고,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의2] <신설 2023. 0. 0.>

성능인증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검사중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검사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라. 검사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성능인증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성능인증취소		

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다. 제품검사 시 법 제39조제4항 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1)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간격 내에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 상으로 한 정밀검사에서 소 방용품의 주된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는 결점(치명적 결 점)이 2개 이상의 제품에서 발생한 경우 2)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간격 내에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 상으로 한 정밀검사에서 소 방용품의 주된 기능을 떨어 뜨리는 결점(중결점)이 2개 이상의 제품에서 발생한 경우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	검사중 지 3개월	검사중 지 6개월	성능인 증 취소
라. 법 제3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	검사중 지 6개월	성능인 증 취소	
마. 법 제39조의2에 따라 변경인 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 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 경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성능인 증 취소		

비고: 품질제품검사의 경우 “검사중지 “란 품질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로 변경
하고,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제32조제1호 관련)

구 분	자 격
책임자(임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검사요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4명 이상)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란 전기·전자·통신, 기계·재료, 화학·화공학, 섬유, 소방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를 말한다.
2.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졸업·학력인정 또는 학위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